

실종성인의 수색·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윤건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756
----------	-------

발의연월일 : 2026. 10. 2.

발 의 자 : 윤건영 · 이광희 · 양부남
윤종균 · 임호선 · 박정현
이해식 · 남인순 · 한준호
권칠승 의원(10인)

제안이유

매년 7만 건 내외의 성인 실종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며, 이는 실종아동등의 신고 건수를 크게 웃도는 규모임. 그럼에도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및 치매환자만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밖의 실종성인은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이라는 경찰청 예규에 따라 ‘가출인’으로 분류·처리되고 있는 실정임.

범죄 혐의가 특정되지 아니한 성인 실종사건에서는 개인위치정보 조회, 영상정보 확보, 카드·교통 이용내역 확인 등 소재 확인에 필수적인 조치를 할 법적 근거가 없어,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혐의를 확인할 수 없고, 혐의를 확인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조사할 수 없는’ 구조적 딜레마가 반복되고 있음. 그 결과 실종성인 중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는 비율은 실종아동등에 비하여 현저히 높고, 미해제 사건 또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나아가 최근 일선 경찰관이 실종자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한 사례가 드러나면서, 실종사건의 처리가 담당자 개인의 경험·업무량·판단에 좌우되고 있으며 이를 교정할 조직적 통제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이 확인됐음. 이에 표준화된 위험도 평가 도구와 위험등급별 의무조치, 종결에 대한 다단계 통제 체계가 법률 수준에서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주요국의 입법례 또한 연령이나 신분이 아니라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기준으로 국가 개입의 수준을 정하고 있음. 영국은 「경찰·범죄·양형 및 법원법 2022」에서 실종자의 소재 파악을 위한 전자기기 정보추출 권한을 관련성·필요성·비례성 요건 아래 규정하면서, 실종자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정보를 추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프랑스는 「형사소송법전」 제74-1조에서 ‘우려스럽거나 의심스러운 실종’에 해당하는 성년자에 대하여 현행범 수사에 준하는 조사 조치를 허용하고, 「국내안전법전」 제L.233-2조에서 차량번호 자동인식 정보 등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되 안면인식 기술의 사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음.

일본은 「행방불명자 발견활동에 관한 규칙」을 통하여 연령과 무관하게 ‘특이행방불명자’ 개념을 두어 위험도에 따라 대응을 달리하고, 발견 시 통지에 관하여는 스토킹·배우자폭력 신고인에 대한 통지 배제 규정을 두고 있음. 미국은 다수의 주에서 고위험 실종성인 개념과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다만, 성인의 소재 확인을 위한 정보 수집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므로, 통신사실확인자료와 실시간위치정보의 제공 요청, 전자기기 정보추출 및 얼굴인식 검색은 검사의 청구에 따른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 사후허가를 받지 못하면 수집한 정보를 즉시 파기하고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그 운용 현황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다층적인 통제장치를 둘 필요가 있음.

이에 실종성인에 대한 신고·수색·발견·보호 및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헌법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한편, 성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자기결정권이 필요한 범위를 넘어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절차적 통제장치를 함께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실종성인에 대한 신고·수색·발견·보호 및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신속대응의 원칙, 위험도 기반 비례대응의 원칙, 자기결정권 존중의 원칙, 최소침해 및 목적구속의 원칙, 2차 피해 방지의 원칙을 기본원칙으로 명시함(안 제1조 및 제3조).

나. “실종성인”을 소재 또는 행방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안전 여부를

확인할 상당한 필요가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위험도에 따라 “위험실종성인”과 “긴급실종성인”으로 구분함(안 제2조 및 제17조).

다. 경찰청장은 5년마다 실종성인 수색·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경찰청에 국가실종대응센터를, 시·도경찰청에 실종전담수사대를, 경찰서에 실종전담팀을 두어 전담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경찰청장은 실종성인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를 실종아동 등 관련 정보시스템, 무연고 사망자·신원 미확인자 관련 정보, 사회복지업무 관련 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경찰청장이 실종 위험이 높은 사람의 신청과 동의를 받아 신상정보 등을 미리 등록할 수 있는 사전등록제를 도입함(안 제12조).

사. 실종대응 민관협의회를 두고, 수색협력자를 등록하여 수색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며, 그 결격사유·의무 및 제재를 정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아. 경찰관서의 장은 관할과 관계없이 신고를 접수하여야 하며, 표준 위험도평가도구에 따라 1시간 이내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도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위 등급으로 추정하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7조).

자. 위험등급별로 반드시 하여야 하는 조치와 그 이행시한을 정하고, 필수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상급자에게 자동으로 경보가 통보되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21조).

차. 채권추심 등 부당한 목적의 신고를 제한하고, 실종성인 본인이 자신의 소재에 관한 통지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미리 등록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카. 경찰관서의 장은 삭제·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영상정보의 긴급 보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타. 위험실종성인에 대하여 개인위치정보등, 이동경로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실종성인에 대하여는 금융거래 발생사실의 확인을 요청하거나 전자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도록 하되 관련성·필요성·비례성 및 선별추출의 요건을 규정함(안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파. 영상정보 분석기술의 활용 근거를 두되, 얼굴인식정보에 의한 검색은 긴급실종성인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함(안 제29조).

하. 실종성인 경보 제도를 도입하여, 긴급실종성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전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건·기간 및 해제를 규정함(안 제32조 및 제33조).

거. 실종성인 및 신원불상자에 대한 유전자검사와 데이터베이스의 구

축·연계 검색 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너. 실종성인을 발견한 때에는 경찰공무원이 직접 대면하여 안전을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소재 등을 신고인에게 통지하며, 신고인이 가정폭력·스토킹·성폭력 행위자인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39조 및 제40조).

더. 실종성인의 등록 해제는 담당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도록 하고, 위험등급에 따라 단계별 승인을 받도록 하며, 관련 기록의 임의 삭제를 금지하고 처리이력을 보존하도록 함(안 제42조 및 제43조).

러. 경찰청장은 매년 이 법에 따른 정보 수집·이용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점검을 받도록 함(안 제47조).

머. 허위로 실종성인을 발견한 것처럼 처리하거나 관련 기록을 임의로 삭제한 자, 수집한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한 자 등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를 규정함(안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실종성인의 수색·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실종성인에 대한 신고·수색·발견·보호 및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성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도록 하며, 실종성인가족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성인”이란 통상적인 생활관계, 연락 상황 및 실종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소재 또는 행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안전 여부를 확인할 상당한 필요가 있는 실종 당시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등

나. 「형사소송법」 등 형사 관계 법령에 따라 체포·구속·구인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피의자로 지명수배 중인 사람. 다만, 제17조제2항제1호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군형법」에 따른 군무 이탈로 지명수배 중인 사람
- 3) 보호관찰 대상자로서 소재가 불명하여 지명수배 중인 사람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에 따른 수색·구조의 대상이 되는 사람. 다만, 해당 수색·구조가 종료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위험실종성인”이란 제17조에 따른 위험도 평가 결과 위험 등급 또는 긴급 등급으로 분류된 실종성인을 말한다.
- 3. “긴급실종성인”이란 제17조에 따른 위험도 평가 결과 긴급 등급으로 분류된 실종성인을 말한다.
- 4. “실종성인가족”이란 실종성인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직계혈족, 형제자매, 그 밖에 실종성인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 5. “신원불상자”란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한 변사자 또는 변사체의 일부,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한 채 의료기관·보호시설 등에서 보호되고 있는 사람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를 말한다.
- 6. “개인위치정보등”이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를」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주소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다목부터 사목까지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말한다.

7. “이동경로정보”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정보로서 실종성인의 이동경로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8. “전자기기”란 정보가 전자적 형태로 저장될 수 있는 장치 및 그 구성부분을 말한다.

9. “정보추출”이란 전자기기에 저장된 정보 중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복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제28조제8항 단서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유전자검사”란 개인 식별(識別)을 목적으로 혈액·머리카락·침 등의 검사대상물로부터 유전자를 분석하는 행위를 말하며, “유전정보”란 유전자검사의 결과로 얻어진 정보를 말한다.

11. “신상정보”란 이름·나이·사진 등 특정인(特定人)임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말한다.

12. “경찰관서”란 경찰청,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와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관서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신속대응의 원칙: 실종의 초기 대응이 실종성인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체 없이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위험도 기반 비례대응의 원칙: 실종성인의 연령이나 신분이 아니라 그가 처한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의 정도에 따라 대응의 수준과 국가의 개입 정도를 정하여야 한다.

3. 자기결정권 존중의 원칙: 성인은 스스로 거주와 이전을 결정할 권리가 있음을 존중하여, 실종성인의 안전이 확인된 후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소재를 공개하거나 복귀를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최소침해 및 목적구속의 원칙: 이 법에 따라 수집한 정보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 수집·이용하여야 하며,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5. 2차 피해 방지의 원칙: 실종성인, 실종성인가족 및 관계인의 명예와 생활의 평온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인이 가정폭력, 스토킹, 아동학대, 성폭력, 인신매매, 채무 관련 위협 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스스로 소재를 감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단순한 가출로 보아서는 아니 되며, 그 안전 확보와 보호를 우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종성인의 신속한 수색과 발견 및 안전한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실종성인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실종성인에 대한 신고·수색·발견 체계의 구축 및 운영
3. 제10조에 따른 실종성인정보시스템 및 이 법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4. 제17조에 따른 표준위험도평가도구의 개발·보급 및 정기적 개선
5. 실종성인 수색·발견에 필요한 기술의 개발과 장비의 보급
6. 실종성인 발견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7. 실종성인의 발견 과정에서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8. 그 밖에 실종성인의 수색·발견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실종성인 수색·보호 기본계획) ① 경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실종성인 수색·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성인 대응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전담 인력의 확보 및 전문성 강화에 관한 사항
3. 수색 장비 및 과학적 수색·분석 기법의 확충에 관한 사항
4. 민간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이 법에 따른 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통제 및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③ 경찰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의 공표) ① 경찰청장은 3년마다 실종성인의 발생 원인, 처리 실태, 발견 및 미발견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매년 실종성인의 신고 접수 건수, 위험등급별 현황, 발견 및 사망 확인 건수, 미해제 건수 현황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계는 성별·연령대별·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실종성인의 신고·수색·발견 및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에 따라 실종성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같은 법에 따른 절차로 전환하고, 이 법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같은 법에 따른 업무에 이용할 수 있다. 그 반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 따라 수집·처리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

하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2장 대응조직 및 정보시스템

제8조(국가실종대응센터) ① 실종성인 및 실종아동등에 대한 수색·발견 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국가실종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국의 실종사건 정보의 통합 관리 및 실시간 공유
2.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에 대한 수색·수사의 지원, 지도 및 조정
3. 제17조에 따른 위험도 평가의 적정성 점검 및 제21조에 따른 정보의 관리
4. 실종성인 경보의 발령·해제에 관한 사무의 총괄
5. 실종사건 분석, 이동경로 예측 등 과학적 수색·수사 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6.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7.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종아동등의 신고 접수, 수색·수사 및 발견에 관한 경찰청장의 업무 지원
8. 그 밖에 실종성인의 수색·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센터의 조직·인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실종전담수사대 및 실종전담팀) ① 시·도경찰청장은 실종사건을 전담하는 실종전담수사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실종전담수사대는 초동대응, 현장수색, 영상정보 분석, 통신·금융·차량정보 분석, 실종 수사 및 가족 지원 등의 기능별로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실종전담수사대가 직접 수행하거나 지휘한다.

1. 긴급실종성인에 관한 사건

2. 범죄와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사건

3. 그 밖에 시·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④ 경찰서장은 실종사건을 전담하는 실종전담팀을 두어야 한다. 다만, 관할 인구, 실종신고 접수 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접 경찰서와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⑤ 경찰청장은 실종전담수사대 및 실종전담팀에 소속된 사람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준하여 지방해양경찰청에 실종전담수사대를, 해양경찰서에 실종전담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청 소관 실종사건에 관하여는 이 법 중 “시·도경찰청장”은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경찰서장”은 “해양경찰서

장”으로, “시·도경찰청 실종전담수사대의 장”은 “지방해양경찰청 실종전담수사대의 장”으로, “경찰청장”(제8조, 제10조, 제17조 및 제34조의 경찰청장은 제외한다)은 “해양경찰청장”으로 본다.

제10조(실종성인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경찰청장은 실종성인에 대한 신속한 신고 접수, 위험도 평가, 수색·발견 및 사건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실종성인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실종성인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사항 및 실종성인의 신상정보의 등록·조회
2. 제16조에 따른 확인조치의 내용·결과 및 실종성인 해당 여부 판단 근거의 기록
3. 제17조에 따른 위험도 평가 결과 및 그 변경 이력의 기록
4. 제18조에 따른 필수조치의 이행 여부 및 이행 시각의 기록
5. 제21조에 따른 자동경보의 발신
6. 제42조에 따른 등록 해제의 승인 절차의 수행
7. 제43조에 따른 처리이력의 자동 생성 및 보존

③ 실종성인정보시스템의 모든 입력·수정·삭제 및 조회 기록은 자동으로 생성·보존되어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실종성인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정보의 연계) ① 경찰청장은 실종성인의 조속한 발견과 신원확인을 위하여 실종성인정보시스템을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 또는 자료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종아동등 관련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2.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업무 관련 정보시스템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에 관한 자료
4.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신원 미확인자에 관한 자료
5. 의료기관에서 보호하고 있는 신원 미확인 환자에 관한 자료
6. 그 밖에 실종성인의 발견 및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연계는 실종성인의 발견 및 신원확인의 목적에 한정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연계되는 정보의 범위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보유·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연계 및 자료 제공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연계가 가능한 정보의 범위, 연계의 방법·절차 및 보안대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사전등록) ① 경찰청장은 실종의 위험이 높은 사람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본인의 신청과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미리 등록·관리할 수 있다.

1. 신상정보 및 사진

2. 지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

3. 평소의 생활양식, 자주 방문하는 장소, 건강상태 등 발견에 도움이 되는 정보

4. 실종 시 연락할 사람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 등록의 정정 또는 말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찰청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정보는 해당인의 실종성인 여부를 확인하거나 그 소재를 발견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종의 위험이 높은 사람에게 위치정보 확인이 가능한 기기의 보급 등 실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사전등록의 신청 자격·절차, 등록 정보의 관리 및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실종대응 민관협의회) ① 실종성인의 수색·발견에 관한 민간과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에 실종대응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민간의 수색 참여 절차 및 방법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2. 수색협력자의 양성·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민간이 보유한 장비·인력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실종성인가족에 대한 민간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색 장비 및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수색협력자의 등록 및 활용) ① 경찰청장은 수색견 운용, 무인 비행장치 운용, 산악·수중 수색, 영상분석, 심리분석 등 실종성인의 수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수색협력자로 등록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색협력자로 등록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③ 경찰관서의 장은 수색현장의 규모, 지형, 실종성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수색협력자에게 수색활동에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수색활동에 참여하는 수색협력자는 경찰관서의 장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색활동 중 알게 된 실종성인, 실종성인가족 및 관계인의 개인 정보 또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2. 실종성인가족 등에게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3. 미행, 감시, 촬영 등 수색의 범위를 넘어서는 조사활동을 하는 행위

⑤ 경찰청장은 수색협력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⑥ 경찰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수색활동에 참여한 수색협력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수색협력자의 등록 요건·절차, 교육, 활용 및 등록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신고 및 초동조치

제15조(신고의 접수) ① 경찰관서의 장은 관할과 관계없이, 그리고 실종된 때부터 경과한 시간과 관계없이 실종성인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실종성인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해당 신고사건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은 해당 신고를 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실종성인의 성명·주소·연락처 및 인상착의 등 신상정보와 사진
 2. 소재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일시·장소 및 경위
 3. 최종 목격 장소, 최종 통화 내역 및 소지품
 4. 평소의 생활양식, 건강상태, 복용 중인 의약품 및 정신적·신체적 취약성에 관한 사항
 5. 제17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6. 범죄피해의 가능성 및 실종성인과 갈등관계에 있는 사람에 관한 정보
 7. 발견 시의 조치에 관한 신고인의 의사
 8. 그 밖에 위험도 평가와 발견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사항
- ④ 경찰관서의 장은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인에게 이 법에 따라 경찰이 할 수 있는 조치의 내용, 제40조에 따른 통지의 제한, 제

41조에 따른 지원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⑤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신고인에게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신고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신고에 대한 확인조치) ① 경찰관서의 장은 신고된 사람이 실종성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신고의 진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종성인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료 조회, 주변인물 등으로부터의 진술 청취, 현장 탐문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와 제15조제3항에 따라 청취한 내용 등을 토대로 신고된 사람이 실종성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판단의 근거를 지체 없이 실종성인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 중 실종성인의 수색·발견 또는 사후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하거나 연계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위험도 평가) ① 경찰관서의 장은 신고를 접수한 때부터 1시간 이내에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위험도평가도구에 따라 실종성인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실종성인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위험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긴급 등급: 실종성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즉시 발견하지 아니하면 생명·신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 자살의 의사 또는 계획을 표시하거나 유서를 남기는 등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실종 당시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긴급한 의료적 처치 또는 의약품의 투여가 필요한 경우

다. 범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위험이 발생하였을 우려가 있는 경우

라. 수난사고, 교통사고, 산악사고 등 생명과 관련된 사고를 당하였을 우려가 있는 경우

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의 피해자이거나 피해자였던 사람으로서 그 위험이 계속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위험 등급: 신고내용, 실종 당시의 정황, 평소의 생활양식 및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실종성인이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에 처하였을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일반 등급: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에서 정보가 부족하고,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협을 배제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바로 위 등급으로 추정하여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정된 등급은 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 결과로 본다.

④ 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험도를 다시 평가하여야 한다.

1. 실종성인의 소재 또는 상태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된 경우
2. 실종성인가족 또는 신고인이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
3. 위험도 평가일부터 7일이 지난 경우
4. 그 밖에 위험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위험도를 하향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소속 실종전담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긴급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도경찰청 실종전담수사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경찰청장은 실종사건의 처리 결과를 분석하여 3년마다 표준위험도평가도구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제18조(위험등급별 필수조치) ① 경찰관서의 장은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긴급 등급: 평가 후 즉시 제23조에 따른 영상정보의 긴급 보존 요청, 제25조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등의 제공 요청, 최종 목격 장소 및 주거지에 대한 현장 확인, 실종전담수사대에 대한 통보를 하고,

필요한 경우 수색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야 한다.

2. 위험 등급: 평가 후 12시간 이내에 제23조에 따른 영상정보의 긴급 보존 요청,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정보의 제공 요청, 주변인물에 대한 탐문조사를 하여야 한다.

3. 일반 등급: 평가 후 24시간 이내에 실종성인정보시스템을 통한 조회, 주변인물에 대한 진술 청취 및 최종 목격 장소의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한 때에는 그 이행 시각과 내용을 실종성인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인의 소재가 이미 확인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 중 일부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위험 등급은 소속 실종전담팀의 장의, 긴급 등급은 시·도경찰청 실종전담수사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실종성인의 등록 및 등록의 제한) ① 경찰관서의 장은 신고된 사람이 실종성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제17조에 따른 위험도 평가 결과를 실종성인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인 신고의 오용 및 남용을 방지하고 신

고된 사람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종성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해당 신고가 채권추심, 소송서류의 송달, 재산상 이익의 취득 등 부당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신고된 사람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복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통지 거부 의사에 실종성인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4. 해당 신고가 가정폭력, 스토킹, 성폭력, 아동학대, 교제폭력, 인신매매 또는 그 밖에 실종성인의 생명·신체·자유를 침해한 사람에게 실종성인의 소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5. 행정기관이 행정조사 또는 조세·복지·보건 등 소관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당사자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고를 한 경우
6. 그 밖에 실종성인으로 등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서의 장은 신고된 사람이 제17조에 따른 위험도 평가 결과 긴급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생명·신체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안전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

을 해제하고, 제40조에 따라 신고인에 대한 통지를 제한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0조(부당신고의 금지 및 통지 거부의 사전등록) ① 누구든지 실종성인의 생명·신체의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닌 채권추심 등 부당한 목적이나 허위의 내용으로 실종성인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18세 이상인 사람은 자신에 대한 실종성인 신고가 있는 경우 그 소재 및 소재를 추정할 수 있는 사항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미리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경찰청장은 그 의사를 실종성인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은 언제든지 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등록은 제39조에 따른 안전의 확인 및 제41조에 따른 보호·연계 지원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청·등록 및 철회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지휘·보고 및 자동경보) 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인을 긴급등급으로 평가한 때에는 즉시 시·도경찰청장 및 센터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실종성인정보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자의 조치와 관계없이 소속 실종전담팀의 장, 경찰서장 및 시·도경찰청 실종전담수사대의 장에게 자동으로 경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1. 긴급 등급으로 평가된 경우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가 그 시한 내에 입력되지 아니한 경우
3. 제18조제1항에 따른 필수조치의 이행 사실이 그 시한 내에 입력되지 아니한 경우
4. 실종성인으로 등록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도록 발견되지 아니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경보를 통보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지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실종성인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4장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한 활동

제22조(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한 활동) 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인을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주거지, 최종 목격 장소 또는 실종성인이 소재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장소에 대한 탐문조사

2. 신고인·목격자 또는 실종성인 주변인물의 진술 청취
3. 실종성인의 소재 및 이동경로 확인에 필요한 정보의 조회
4. 경찰견, 무인비행장치, 항공기, 선박, 열화상 장비, 지중 탐지 장비 등 발견에 필요한 장비를 활용한 수색
5. 실종성인이 공개한 인터넷 게시물 등 공개된 정보의 수집·분석
6. 그 밖에 경찰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수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관서, 군부대, 지방자치단체, 산림청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인력·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영상정보의 긴급 보존 요청) 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인의 이동경로 확인에 필요한 영상정보가 삭제·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영상정보의 보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60일간 해당 영상정보를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은 해당 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며, 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에 관하여는 제26조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거나 해당 실종성인이 발견되어 보존의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요청의 방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공동대응 및 협조 요청) ① 경찰청장은 해수면, 산악, 접경지역 등에서 발생한 실종성인의 신고 및 발견과 관련하여 다른 기관과의 공동대응 또는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국방부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인이 자동차·열차·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교통수단이나 도로·철도·공항·항만·터미널 등의 교통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추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관리하거나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5조(개인위치정보등의 제공 요청) ① 경찰관서의 장은 위험실종성인의 소재 또는 행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보유자”라 한다)에게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을 충족하는 제공자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
에 따른 본인확인기관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대체가입수
단 제공기관

② 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하여는 시·도경찰청
실종전담수사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
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먼저 요청한 후 24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공받은 정보를 지체 없
이 파기하여야 한다.

1. 위험실종성인 명의의 정보통신서비스 가입 여부 및 가입 일시
2. 위험실종성인이 제12조에 따른 사전등록 또는 본인의 사전 동의
에 따라 정보보유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
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③ 경찰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만으로는 위험실종성인의 소
재 또는 행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2
조제11호다목부터 사목까지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주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경찰관서의 장은 긴급실종성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으로는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간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위치정보(이하 “실시간위치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허가의 청구에는 요청의 필요성, 해당 실종성인과 요청 대상 정보의 관련성 및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가서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항목·범위 및 기간을 특정하여 적어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실종성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임박하여 미리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허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제공받은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고 그 사실 및 파기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른 실시간위치정보의 제공 기간은 72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 후단에 따른 허가를

다시 받아 72시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을 포함한 총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⑧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정보보유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해당 위험실종성인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등을 수집할 수 있고 그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과 대상 기간을 소재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⑩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청구 및 집행의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를 준용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이동경로정보의 제공 요청) ① 경찰관서의 장은 위험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법인·단체의 장(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 및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를 통하여 수집된 영상정보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

른 교통카드의 사용명세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신용
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의 사용 일시 및 사용 장소
 4. 「의료법」 제17조의2에 따른 처방전에 기재된 의료기관의 명칭
·연락처·주소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에 기재된
의료행위의 실시 일시
 5.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설치된 차량번호 자동판독 장비를 통
하여 수집된 차량의 통행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정보
 6. 「출입국관리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출국 및 입국에 관한
사실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
른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승차 기록
 8. 그 밖에 실종성인의 이동경로 확인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정보
- ②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대상 기
간과 지역을 실종성인의 이동경로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정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은 시·도경찰청 실종전담수사대의 장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2항 단서를
준용한다.
- ④ 제1항제4호의 정보는 실종성인의 생명·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소재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금융거래 발생사실의 확인 요청) ① 경찰관서의 장은 긴급실종성인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해당 긴급실종성인 명의의 금융거래가 발생한 사실과 그 일시 및 장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정보에는 거래 금액, 거래 상대방, 계좌의 잔액 및 자산 내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은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요청 및 제공에 대하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를 준용한다.

제28조(전자기기 정보의 추출) ① 경찰관서의 장은 긴급실종성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가 사용하였던 전자기기를 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고 제공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전자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추출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추출하려는 정보가 긴급실종성인의 소재 파악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될 것

2. 정보추출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것
 3. 정보추출로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사이에 비례관계가 인정될 것
 4. 정보추출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
- ③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추출하려는 정보의 범위, 추출의 이유, 추출한 정보의 처리 방법,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 및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수색이 종료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체적 장애 등의 사유로 서면에 의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구두로 확인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 ④ 경찰관서의 장은 전자기기의 자발적 제공이나 제공자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항에 따른 자발적 제공 또는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아 정보추출을 할 수 있다.
1. 전자기기의 이용자였던 사람이 긴급실종성인으로서 실종 직전에 해당 전자기기를 이용하였고, 그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여 있거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자기기의 이용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성인으로서 그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여 있거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허가의 청구에는 제2항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는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가서에는 추출의 대상이 되는 전자기기, 추출할 정보의 항목·범위 및 대상 기간을 특정하여 적어야 한다.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실종성인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임박하여 미리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정보추출을 한 후 지체 없이 허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추출을 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추출한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고, 그 사실 및 파기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경찰관서의 장은 추출하려는 정보만을 선별하여 추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 사유로 선별추출이 불가능하여 전자기기에 저장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고, 선별을 마친 후 나머지 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하며, 그 삭제 결과를 실종성인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⑨ 경찰관서의 장은 정보추출 및 제8항 단서에 따른 선별 과정에 전자기기의 이용자 또는 실종성인가족을 참여하게 하여야 하며, 추출을 마친 때에는 추출한 정보의 상세목록을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참여하게 하는 것이 실종성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

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⑩ 경찰관서의 장은 「형사소송법」 제112조 및 제149조에 따라 압수를 거부할 수 있는 자료 등 법률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는 정보가 함께 취득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외하고 추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거나 그 방법의 사용이 합리적으로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정보추출을 할 수 있다.

⑪ 의사능력이 없는 성인을 대신하여 전자기기를 제공하고 정보추출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⑫ 이 조에 따른 정보추출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수색·검증에 관한 권한을 대체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⑬ 경찰청장은 이 조에 따른 정보추출의 절차, 판단 기준, 기록 및 통제에 관한 실무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9조(영상정보 분석기술의 활용과 제한) ① 경찰관서의 장은 제26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제공받은 영상정보를 분석하여 실종성인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처리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석을 위하여 얼굴인식정보를 이용한 검색은 긴급실종성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미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검색한 후

지체 없이 허가를 청구하여야 하며, 검색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파기하고 그 사실 및 파기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색의 대상은 해당 긴급실종성인의 얼굴인식정보로 한정하며, 그 밖의 사람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석의 결과만을 근거로 실종성인의 소재를 확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자료에 의한 확인을 거쳐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청구 및 집행, 분석 결과의 기록·보존 및 파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출입·조사 및 질문) ① 경찰관서의 장은 주거 또는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장소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관리인(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실종성인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고 구조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에 따른다.

② 경찰관서의 장은 위험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 실종성인의 주소·거소, 실종성인이 있다고 의심되는 장소 또는 실종성인의 고용 장소(이하 “관계장소”라 한다)에 출입하여 관계인이나 실종성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입·조사 또는 질문을 하려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 등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출입·조사 또는 질문을 할 때에는 해당 관계장소의 관계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계장소에 관계인이 없거나 관계인이 참여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직원 등을 참여하게 하여 출입·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⑤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종성인가족 등을 동반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및 파기 등) ① 경찰관서의 장과 경찰관서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제공받거나 추출한 정보를 실종성인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법에 따라 제공받거나 추출한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1. 실종성인을 발견하거나 그 소재를 확인한 때
2. 제42조에 따라 실종성인의 등록을 해제한 때
3. 해당 정보가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하여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실종사건이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어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 절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처리한다.

④ 경찰관서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거나 추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통지하는 것이 실종성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과 그 항목 및 범위
2. 수집된 정보는 이 법에 따른 실종성인 발견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된다는 사실
3. 정보 수집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파기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방법

⑤ 경찰관서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정보의 요청·제공·이용·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⑥ 이 법에 따른 정보의 제공 요청 및 파기의 방법·절차, 제4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실종성인 경보의 발령) ①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실종성인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하는 실종성인 경보(이하 “경보”라 한다)를 발령할 수 있다.

1. 실종성인이 긴급실종성인에 해당할 것
2. 경보의 발령이 실종성인의 발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인정될 것

3. 실종성인의 생명 또는 신체 보호의 필요성이 공개로 인한 사생활 침해보다 현저히 크다고 인정될 것

②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보를 발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실종성인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통지 거부의 의사를 등록한 경우

2. 실종성인이 가정폭력, 스토킹, 성폭력 등의 피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소재를 감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경보의 발령이 오히려 그 신변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경보의 발령으로 실종성인 또는 그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고 그 우려가 발견의 이익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3조(경보의 내용·방법 및 해제) ① 경보에는 실종성인의 성명, 나이, 성별, 인상착의, 사진, 실종 일시 및 장소, 제보를 받을 연락처를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종성인의 발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한정하여야 하며, 실종의 원인, 병력(病歷), 가족관계 등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보는 방송, 정보통신망,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한 문자전송, 옥외광고물, 대중교통시설의 안내장치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③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한 문자전송의 방법으로 경보를 하는 경우 그 대상 지역은 실종성인이 소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④ 정보의 유효기간은 발령한 날부터 7일로 한다. 다만,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⑤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보를 해제하고, 공개된 정보의 삭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실종성인이 발견되거나 그 사망이 확인된 경우
2.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정보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실종성인 또는 실종성인가족은 정보의 해제 또는 공개된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정보의 발령·갱신·해제의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유전자검사의 실시) ① 경찰청장은 실종성인의 발견과 그 신원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유전자검사대상물(이하 “검사대상물”이라 한다)을 채취할 수 있다.

1. 실종성인가족 또는 실종성인을 찾고자 하는 친족으로부터의 채취
2. 실종성인이 실종 전에 착용·소지하였던 물건이나 거주하였던 장소에서의 채취
3. 실종성인으로 추정되는 변사자 또는 변사체의 일부로부터의 채취
4. 발견된 실종성인 본인으로부터의 채취

- ② 경찰청장은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검사대상물을 채취하려는 경우 미리 검사대상자 또는 검사대상물과 관련된 물건이나 장소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서면동의를 받는 경우 그 대상자가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일 때에는 본인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심신상실, 심신미약 또는 의사무능력 등의 사유로 본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경찰청장은 유전자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⑤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유전자검사의 대상이 되는 실종성인 및 그 가족·친족의 신상정보를 그 동의를 받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물을 채취하거나 제4항에 따라 유전자검사를 실시하려면 미리 실종성인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종성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⑦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는 경우 유전정보는 검사기관의 장이, 신상정보는 경찰청장이 각각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⑧ 경찰청장은 실종성인가족이 유전자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검사대상물의 종류·채취 방법, 유전자검사의 실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동의의 방법 및 유전정보와 신상정보의 구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신원불상자에 대한 조치) ① 경찰관서의 장은 변사자 또는 변사로 의심되는 시체를 발견하거나 시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원 확인 및 범죄 관련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 후에도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대상물을 채취하여 검사기관에 유전자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제36조에 따라 대조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신원불상자의 조속한 신원확인을 위하여 그 법의학적 특징, 유류품, 발견 장소 및 일시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자(死者)의 존엄과 유족의 감정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한 사람을 보호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경찰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실종성인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인물에 관한 실종신고가 접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6조(데이터베이스의 연계 검색) ① 검사기관의 장은 실종성인의 발견과 신원불상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제34조제4항에 따라 구축·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다음 각 호의 데이터베이스와 상호 연계하여 검색할 수 있다.

1. 변사자 또는 변사체의 일부에 대한 유전자검사 결과를 수록한 데이터베이스
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된 데이터베이스
3. 그 밖에 신원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데이터베이스

②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색이 이 법에 따른 실종성인의 발견 및 신원확인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계 검색은 신원불상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다른 범죄의 수사 또는 형사재판을 위한 자료로 이용할 수 없다.

④ 데이터베이스의 연계 검색의 범위·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와 열람) ① 검사기관의 장은 유전자검사를 끝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대상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대상자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을 경우 검사대상물과 유전정보를 일정 기간 보관할 수 있다.

② 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유전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1. 실종성인을 발견하거나 그 소재 또는 생사를 확인한 때
2. 신원불상자의 신원이 확인된 때
3. 검사대상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요청한 때

③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④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대상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유전자검사 결과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폐기의 절차·방법 및 기록·보관, 열람 및 사본 발급의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유전정보 및 신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① 누구든지 실종성인의 발견 및 신원확인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제34조에 따른 검사대상물의 채취, 유전자검사의 실시를 하거나 유전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검사대상물의 채취, 유전자검사 또는 유전정보의 관리에 종사하

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채취한 검사대상물 또는 유전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성인, 실종성인가족 및 관계인의 신상정보를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발견 시의 조치 및 지원

제39조(발견 시의 안전 확인) 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인을 발견하거나 그 소재를 확인한 때에는 경찰공무원이 직접 대면하여 해당 실종성인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안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과 사유를 실종성인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실종성인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등 대면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영상통화 등 실종성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안전이 확인된 경우

3. 다른 기관이 작성한 공적 자료에 의하여 그 안전이 확인된 경우

③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을 확인한 때에는 해당 실종성인에게 실종신고가 접수된 사실과 신고인 및 신고사항

을 알리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신고인 또는 실종성인가족에게 연락하거나 복귀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2. 자신의 소재 또는 소재를 추정할 수 있는 사항을 신고인에게 통지하는 데 동의하는지 여부
3. 제41조에 따른 보호·연계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
- ④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인이 복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복귀를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신고인에 대한 통지 및 그 제한) ① 경찰관서의 장은 제3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신고인 또는 실종성인가족에게 실종성인의 소재 또는 소재를 추정할 수 있는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실종성인이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인 또는 실종성인가족에게 실종성인의 안전이 확인되었다는 사실 외에 그 소재 또는 소재를 추정할 수 있는 사항을 알려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서의 장은 신고인이 실종성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종성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종성인의 안전이 확인되었다는 사실을 포함하여 어떠한 사항도 통지하지 아니한다.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그 밖에 실종성인의 생명·신체·자유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 ④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인이 심신미약, 의식불명 등의 사유로 제39조제3항에 따른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생명·신체의 보호를 우선하여 실종성인가족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호 및 복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통지하지 아니한다.
- ⑤ 실종성인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실종성인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 ⑥ 통지의 방법·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발견된 실종성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 ① 경찰관서의 장은 발견된 실종성인이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의 장에게 필요한 협력을 요

청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서의 장은 발견된 실종성인이 정신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경찰관서의 장은 발견된 실종성인이 가정폭력, 스토킹, 성폭력, 인신매매 등의 피해자이거나 주거가 없어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보호시설, 상담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임시 거주지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견된 실종성인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상담, 의료, 주거 및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2조(실종성인 등록의 해제) ① 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종성인의 등록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제39조에 따라 실종성인의 안전이 확인된 경우
2. 실종성인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만,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신고인이 신고를 철회한 경우. 다만, 실종성인이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에 처하였을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활동의 개시 이후에 확인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해제는 담당 경찰공무원이 단독으로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일반 등급: 소속 실종전담팀의 장의 승인

2. 위험 등급: 경찰서장의 승인

3. 긴급 등급: 시·도경찰청 실종전담수사대의 장의 승인

③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사람은 제39조에 따른 안전 확인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확인 내용을 실종성인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해제하는 때에 해당 실종성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복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39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통지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의사와 관련 사항을 실종성인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등록된 의사는 해당 실종성인이 이를 철회할 때까지 유지되며, 이후 같은 사람에 대한 실종성인 신고가 접수된 경우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른 판단의 자료로 활용한다.

제43조(기록의 보존 및 임의 삭제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실종성인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실종성인 관련 자료를 정당한 권한 없이 삭제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실종성인정보시스템에 대한 모든 입력·수정·삭제 및 조회의 이력은 자동으로 생성되어 보존되어야 하며, 그 이력은 삭제할 수 없다.
- ③ 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 법에 따른 절차가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실종성인에 관한 기록의 보존기간 및 폐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 제44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에서 별도의 요건과 절차를 정한 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경찰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및 전산망의 이용에 대하여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⑥ 요구 자료의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손실보상) 이 법에 따른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경찰관”은 “공무원”으로 본다.

제46조(교육 및 훈련) ① 경찰청장은 실종성인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위험도 평가, 초동조치, 정보 분석, 실종성인가족 응대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관계 기관, 민간단체 및 수색협력자와 합동으로 정기적인 수색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47조(정보 처리에 대한 통제 및 국회 보고) ① 경찰청장은 매년 이 법 제4장에 따른 정보의 제공 요청 및 이용 현황, 제29조제2항에 따른 얼굴인식정보 검색 현황, 제32조에 따른 정보의 발령 현황 및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공표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매년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재외국민 실종에 대한 협력) ① 경찰청장은 재외국민이 국외에서 실종된 경우 외교부장관과 협력하여 그 소재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형사경찰기구 및 외국의 법 집행기관과 정보를 교환하고 공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검사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1조(면책) 경찰공무원이 법령과 적법한 지휘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조치로 인하여 민사상 및 징계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장 벌칙

제5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공받거나 추출한 정보를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2.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목적 외의 용도로 검사대상물의 채취 또는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거나 유전정보를 이용한 자
 3.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물 또는 유전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자
 4.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원의 허가 없이 얼굴인식정보를 이용한 검색을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실종성인 외의 사람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검색을 한 자
 5. 제28조제5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법원의 허가 없이 정보추출을 한 자
 6.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사실 확인자료, 인터넷주소 또는 실시간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9조에 따른 안전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한 것처럼 실종성인정보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거나 제42조에 따른 등록 해제를 한 자
2.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자료를 삭제하거나 변경한 자
3. 제2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정보추출을 하거나, 같은 조 제8항 단서를 위반하여 나머지 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목적으로 실종성인 신고를 하여 이 법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게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전등록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2.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3.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4. 제40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실종성인의 동의 없이 그 소재 또는 소재를 추정할 수 있는 사항을 알려준 자
5. 제14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수색활동 중 알게 된 개인정보 또

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수색협력자

6.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을 행사하여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 또는 질문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④ 제14조제4항제2호를 위반하여 실종성인가족 등에게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한 수색협력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목적이나 허위의 내용으로 실종성인 신고를 한 자. 다만, 제52조제2항제4호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5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제공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한 사람을 보호하게 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관서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준위험도평가도구에 관한 경과조치) 경찰청장은 이 법 시행 전까지 제17조제1항에 따른 표준위험도평가도구를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따라 가출인으로 접수되어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사건은 이 법에 따라 실종성인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보는 사건에 대하여 경찰관서의 장

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7조에 따른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